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7. 9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98. 7. 16
- 다. 상정일자 : 98. 7. 16(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자 : 재무과장 정 부 웅
- 나. 개정사유

-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(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,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.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(개정조례안 제11조의 2호)
- 개정안
 - 공동주택 전용면적 "60제곱미터 이하인"을 "85제곱미터 이하인"으로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면적을 60㎡이하를 85㎡이하로 확대한 것으로써, 지방세수에는 다소의 감소가 예상되나,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, 지방세법 제9조(과세 면세등을 위한 조례)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 하였고,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를

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호중 "60제곱미터이하인"을 "85제곱미터이하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 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 공공단체, 주택건설사업자(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시공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) ·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을 말한다)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. (단서 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전용면적 <u>60제곱미터이하인</u> 임대목적의 공동주택(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. (생략) 	<p>제11조 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 (단서 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85제곱미터이하인</u> 3. (현행과 같음)